

사단법인 한국병원약사회

(우06725)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길 42 갑목빌딩 7층/ 전화(02)583-0887/ 전송(02)521-5629/
E-Mail:kshp21@korea.com / 사무국장 손현아 / 사무차장 조용준 / 담당자 오지영

문서번호 병약 2018-563호

시행일자 2018. 7. 6. (금요일)

(경유)

수 신 약제부서장

참 조

선 결			지 시	
접 수	일자 시간 번호	. . :	결 재 · 공 람	
	처리과			
	담당자			

제 목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 지시 알림(프로톤펌프억제제)

1. 귀 원 및 임직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3699호(2018.6.18.), -4141(2018.7.4.)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 지시 알림(프로톤펌프억제제)” 관련입니다.

3. 식약처에서는 「약사법」 제76조제1항 단서조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프로톤펌프억제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지시 하였음을 알려왔기에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 일자 : 2018. 8. 4.

붙임 1. 허가사항 변경지시 내용

2. 품목 및 업체 현황

(사) 한국병원약사회

